

●소방청공고제2020-163호

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, 행정예고(2020.7.7.~7.27.)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재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
소 방 청 장

「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재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식을 신설하고, 자체 점검항목과 성능시험조사항목은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도록 조정 및 수정하며, 성능시험조사표를 일부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(안 고시 별표 1)
- 나.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(안 고시 별지 제1호의3)
- 다.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(안 고시 별지 제3호)
- 라. 성능시험조사표 개선(안 고시 별지 제4호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(참조 : 소방분석제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1) 일반우편 : 30127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, 한림프라자 409호
- 2) 전자우편 : inspector79@korea.kr
- 3) 팩스 : 044-715-762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소방시설등 점검표에 대한 사항

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(전화 (044)-205-7524, 팩스 044-715-7621)

나.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대한 사항

소방청 소방산업과(전화 (044)-205-7507, 팩스 044-205-8196)

●질병관리청공고제2020-41호

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(질병관리청고시 제2020-10호, 2020. 9. 14.)」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5일

질병관리청장

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예방접종비용

1.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

구 분	백신비	시행비
지원금액	16,810원	19,010원

2. 시행일 : 공고일로부터 시행

●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0-155호

국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

정부청사관리본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여 무단 경작한 자에 대하여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하려고 하였으나, 불법점유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

2020년 11월 5일

정부청사관리본부장

1. 처분의 제목: 행정대집행 계고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국유재산 불법점유 및 무단경작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
3. 처분의 내용: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점유 중인 국유재산(어진동 502, 정부세종청사 제7옥외주차장과 스포츠센터 사이) 원상복구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시행
4. 불법점유 현황 및 대집행 대상

재산의 표시			불법점유현황			대집행	
소재지	지목	지적(m ²)	행위자	주소	점유내용	대상	방법
어진동 502 (정부세종청사 제7옥외주차장)	대	11,096.3	미상	미상	불법점유 및 무단경작	농작물 및 경작물품	철거 및 원상회복

5. 원상복구 기한: '20. 11. 30.까지
6. 처분의 법적 근거: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
7. 의견제출 장소: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
(☎ 044-200-1139, Fax 044-200-1133, E-mail dbqls3721@korea.kr)
8. 의견제출 기한: 송달된 날(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)로부터 10일 이내
9. 유의사항

가. 원상복구 기한 내 미이행시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불법점유자에게 청구합니다.